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584호
-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8월 11일
-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2.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서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2021.05.18.)됨.

이에,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을 모도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이용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 2조제14호, 제15호 신설).
- 체육시설 특성에 따라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를 추가함(안 제 4조).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2021. 5. 18.>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35조(보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 먼저 **안 제2조(정의)** 제14호와 제15호를 각각 신설하여 “일반이용자”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제14호 “일반이용자”는 「체육시설법」 제2조제5호를, 제15호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안 제4조(책무)**에서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 연령 등 특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 및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민간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체육시설별 제한조치가 각기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스키장, 골프장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제한조치를 두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연령별 조건부 운영¹⁾을 허용하고, 이와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등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한편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은 20종으로 한정되어 있어²⁾, ‘자유업’으로 등록된 요가, 필라테스, 축구교실 등 체육시설들은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

-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도장업(태권도, 합기도, 검도, 권투 등)에서 아동·학생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고,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과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허용하지 아니함.
 - 2)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게 검토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이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분리하여 별도의 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책무)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u>보호·육성</u>하여야 하며, <u>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u>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u>보호·육성</u>하여야 하며, <u>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가 개별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u> 하여야 하고, <u>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u>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u>보호·육성</u>하여야 하며, <u>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u>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u>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 **안 제18조(재정 지원)**에서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을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체육시설 등의 손실이 막대한 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조례안에서 정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지원을 평상시 재정 지원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체계 및 자 국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재정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이외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시장에게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체육시설 등의 손실이 막대한 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이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의안번호
2584**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 의원	2021. 8.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이용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체육시설 특성에 따라 방역 및 예방조치를 위한 시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시 필요한 지원사항 규정함(안 제18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8. 11.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 이종환,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오한아, 최영주 의원(6명) ※(찬성)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이성배 의원(4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1. 5. 18. 시행)」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건으로 조례 제정 필요		
	구 분	원 안	수정안
	제2조(정의)	<p>14.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p> <p>15.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 동의

○ 조례안에서 정한 책무 내용 중 비상시 책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 필요

구 분	원 안	수정안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가 개별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개별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에서 정한 비상시 재정 지원에 내용을 평상시 재정 지원과 구분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 필요

구 분	원 안	수정안
제18조 (재정 지원)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 이외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팀장	김은영(☎2133-2732)	담당	황선민(☎ 2733)
------	-------	----	-----------------	----	-------------